

## 대학발전기금 관리규정

제정 2010. 09. 01    전부개정 2017. 08. 28  
개정 2018. 10. 29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·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대학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경동대학교의 구성원, 동문, 학부모, 기업 및 외부인 등이 학교 발전을 위해 출연한 현금, 유가증권, 도서, 골동품, 고서화 등의 문화재,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있는 유형·무형의 자산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종류) 기금은 사용목적 등의 지정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일반기금 :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
2. 지정기금 : 기부자가 용도를 특별히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

### 제2장 위 원 회

제4조(위원회) 기금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발전기금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은 교학부총장, 기획조정처장, 교무처장, 입학홍보처장, 대외협력처장, 산학협력단장,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은 대학 내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8. 10. 29.)

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관리·운용 계획
  2. 기금과 수익금의 사용계획
  3.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
  4. 그 밖의 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.

###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

제8조(기금의 운용 및 관리) ① 기금은 교육용 시설·기자재의 확충, 학생 장학금, 우수교원초빙, 우수학생 유치, 교육과정 개발, 교원의 연구비, 그 밖의 교육여건 개선 등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지정기금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부자가 특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③ 일반기금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사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기금의 관리) 기금은 전액 대학에 위탁관리 하도록 한다.

제9조(영수증 발급) 기부자가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 줄 수 있다.

### 제4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

제10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 ① 기부자에 대우에는 기부の内容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5장 보 칙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